

# 운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09.03.22 제정  
2010.09.30 1차 개정  
2010.11.19 2차 개정  
2011.05.12 3차 개정  
2019.02.11. 4차 개정  
2023.12.22. 5차 개정  
2024.04.15. 6차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규정은 『운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의식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학생, 교원, 보호자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범위까지 적용한다.

**제 5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제 6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1.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4.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 2 장 학생의 권리

### 제 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 8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3.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 9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1.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10조 【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학생은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3.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1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학생은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제 12조 【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학교의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 강요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 제 1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두발의 길이를 규제받지 않는다.
3.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제 14조 【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하고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본 규정 제107조제10항에서 지정한 물품 및 사전에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 또는 녹화 등을 위한 일체의 기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교원은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3.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및 학교 일과 중 정당한 사유와 제107조제10항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4.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 1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않는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 16조 【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 정보결정 권리를 가진다.
4. 학생은 학교로부터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5. 학생은 과도한 신상정보 수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17조 【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3. 학생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받지 않는다.

#### **제 18조 【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한 제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학생은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받고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다.
4.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

#### **제 19조 【자치활동의 권리】**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제 20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갖는다.

#### **제 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 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학생은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제 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등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3조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생은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급식 재료, 급식 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제 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의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7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 인권담당교사 및 학교장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8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학교는 저소득층, 장애,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교는 다문화가정(동반, 중도입국)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9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1. 학생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1시간 이상 받을 권리가 있다.
2.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30조 【규정개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권리】** 학생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생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 제 3 장 학생의 책임과 의무

**제 31조 【학교 생활규칙 제정 및 운영】** 운중초등학교 생활규칙은 학교 전체가 협의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 32조 【기본품행】** 기본예절과 질서를 잘 지키고, 남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33조 【근태사항】** 학사일정에 따른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 또는 교육현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1. 일과 중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과, 외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학급 또는 학교 단위의 행사에 허락 없이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3. 담임교사 또는 특별실 담당교사가 별도로 지정하여 타 학급 학생들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 금지된 장소를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 34조 【안전사고 예방】**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수업뿐만 아니라 과학실험, 실습, 체육 등 교육활동 시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자신과 타인의 안전 및 생명이 소중함을 인식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안전지원팀(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안전지킴이 등) 지도를 따라야 한다.
4. 학생 현장 교육 시에는 해당 '현장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 35조 【교육활동】**

1. 학생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2. 수업이 시작되면 필요한 교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과학실, 컴퓨터실, 강당, 운동장 등 정규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 활동이 진행될 경우, 미리 이동하여 교육활동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
4. 수업 또는 교육 활동이 시작되면 모든 수업 또는 교육 활동이 담당교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므로 담당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5. 수업 또는 교육 활동 중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 MP3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6. 수업 또는 교육 활동 중 해당 활동과 관련이 없는 타 교과 공부, 만화 또는 동영상을 보는 행위, 껌을 씹거나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다.
7. 외부 음식물은 담임 교사의 허락 없이 가져오지 않는다.
8. 소란행위, 장난, 노래, 돌아다니기, 잠자기, 무단 화장실 출입 등 교육 활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6조 【시설물 이용 및 환경보전 활동】**

1. 과학실, 도서실, 컴퓨터실, 강당 등 특별실을 이용하여 정규 교육활동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특별실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2.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타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책상, 사물함 등 모든 시설물 또는 교재, 교구는 공공기물이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한다.

**제 37조 【소유물 관련】**

1.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 또는 과도한 귀중품, 금품 등을 학교에 갖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져 왔을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그 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자신의 소유물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소유물도 소중함을 인식하여 절대로 손을 대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제 38조 【생활 예절】**

1. 고성, 욕설, 비어, 은어 등 친구들과 선생님이 듣기에 불편하거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났을 때 상대가 누구이건 가벼운 인사로 서로 예절을 표시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본예절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제 39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교우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1.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2. 이성 및 동성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즉시 담임 교사나 보건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 40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수업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학교 시설(운동장,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제 41조 【용의 및 복장】**

1.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3. 두발 및 화장 등 용모로 인하여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교사와 학생이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정한다.

**제 42조 【학급 내외 봉사활동】** 학교 및 학급 내 봉사활동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 43조 【정보통신윤리】**

1.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서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 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생 및 학부모는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교사-학생 간 대화, 학생 간 대화, 학생과 제3자와의 대화 등을 포함)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없다.
  - 2) 다만, 교육 목적의 녹음 또는 청취임을 사전에 교사에게 요청하고 교사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3) 위 2항에 따른 녹음 또는 청취인 경우에도 해당 녹음 또는 청취가 허가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4) 위 2항에 따른 녹음인 경우에도 해당 내용은 일체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없다.

3. 교사, 학생 및 학부모는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기기를 통하여 사실의 유무와 상관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 등 타인의 사생활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4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교육활동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본 규정 제107조제10항을 적용하여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에 있는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각종 휴대용 음향기와 개인용 전자제품 소지는 교육활동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등교와 함께 정규수업 시간까지는 휴대폰 전원을 끄며 교내에서는 방과 후에도 휴대폰이나 통신기기를 이용한 게임 및 동영상 시청 등 비교육적 사용을 제한한다. 단 수업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교사의 지도 아래에 사용할 수 있다.

**제 45조 【식사할 때 지켜야 할 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식사를 한다.

1. 급식실에서 뛰지 않고 질서를 지켜 배식한다.
2. 급식실에서 고성을 지르지 않는다.
3. 급식실의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지 않는다.
4. 배식을 받은 본인 음식만 먹고 잔반 줄이기 활동에 동참한다.

**제 46조 【부모님께 대한 바른 몸가짐】** 밖에 나갈 때는 용무와 장소, 시간을 말씀드린다.

**제 47조 【남을 존중하는 마음】**

1.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폐를 끼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갖는다.

**제 48조 【바르고 고운 말씨】**

1. 나쁜 욕이나 남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2. 남을 헐뜯거나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3. 바르고 고운 말 쓰기를 생활화한다.

**제 49조 【아껴 쓰고 저축하는 습관 갖기】**

1. 용돈은 사용 계획을 세워 아껴 쓰고 절약한다.
2. 학용품을 비롯한 개인 물건은 실용적이며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소중히 다룬다.

**제 50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 교사 또는 담당 교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에게 입장지도를 요청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 회합을 할 때
2.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제 4 장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 제 51조 【보호자의 권리】

1. 보호자는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교우 관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3. 보호자가 제출하는 민원 및 각종 서류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4. 보호자는 학교 민원과 관련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보호자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자원봉사활동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52조 【학교 생활규칙 제정 및 운영】** 운중초등학교 생활규칙 제정 및 개정 협의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의거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약속한다.

**제 53조 【보호자로서의 의무】** 보호자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관심을 두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

1. 보호자는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 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성적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회원가입 등 학교의 행정에 협조해야 한다.
3. 교사, 행정직원 등 교직원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4. 학생의 숙제, 준비물 등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 생활교육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6. 질병 등 긴급 시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을 제시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 내에 등교 시켜야 한다.

### 제 54조 【민원관련 의무】

1. 보호자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시 본인의 성명, 연락처와 본교 학생의 보호자 여부 등 신원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가명 또는 무기명 민원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2. 민원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가 진행되므로 필요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제 55조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책임】

1. 보호자는 학생이 청소년 보호법상 명시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및 청소년 유해업소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학생(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56조 【보호자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제 57조 【학부모 생활】** 학부모는 등교 시간부터 학생들의 하교 시간 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문 안 출입을 제한한다. 부득이한 경우 학교와 사전 연락 후 출입증을 발급받고 패용한 다음 출입하도록 한다.

## 제 5 장 교사의 권리와 의무

**제 58조 【교사의 정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하는 정규교사, 계약제 교사, 시간제 강사, 일시적 또는 일회적 특강을 하는 외부 강사 등 학생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자로 정의한다.

### 제 59조 【교사의 권리】

1.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2. 교사는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3.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또는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4. 교사는 연구자로서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도 보장되어야 한다.
5. 교사는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6.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행정가는 교사가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교사는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교사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60조 【학교 생활규칙 제정 및 운영】** 운중초등학교 생활규칙을 학교 협의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이에 의거한 교사로서의 의무를 약속한다.

**제 61조 【교사의 의무】**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하며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1. 교사는 자신의 교과 및 학생 지도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체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춘다.
4.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교사는 교육활동(체육, 실험, 현장학습 등)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위험성이 높은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교사는 학생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 성관련 문제 또는 신체적 가혹행위 또는 폭력행위(체벌)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교사는 성적처리, 생활지도, 학급 또는 학교행사 등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학생을 차별해서 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8. 담임 교사는 담당 학급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9.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제 62조 【학교장의 의무】** 학교장은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사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1. 학교장은 교권 침해 행위 발생 시 즉각 경찰에 고발 조치(협박, 명예훼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 적용)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권이 침해된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원만하게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언론기관의 학교 내 출입·취재 시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승인 출입 취재시 무단 침입, 공무집행 방해를 사유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4. 학교장은 교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시 교원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5. 학교장은 교직원에 의한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성범죄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범죄 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 63조 【학교생활】**

1. 아침 등교 시 아침맞이 인사를 실시하고, 컴퓨터 작업을 가급적 제한한다.
2. 전문성 신장 연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모색한다.

**제 64조 【체벌 금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생활 지도를 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금하되, 담임 교사 및 상담 교사와의 상담,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육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 제 6 장 학생자치활동

**제 65조 【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 66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4.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67조 【금지활동】**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 68조 【협의·지원 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 69조 【학급자치회 임원】**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1인
2. 반장은 반 전체 학생이 윤번제로 시행하며 일주일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학급 상황이나 학사 일정에 따라 학급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반장은 학급 내 교육활동에 봉사할 책임을 갖는다.

**제 70조 【학년자치회 운영】**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년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1. 학년 다모임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2. 학년자치회 대의원은 학급별 1인으로 구성하며 학년 특성에 따라 인원 및 선출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 71조 【선출】**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 회장·부회장의 성별은 구별하지 않는다.
4.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통솔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 72조 【전교 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 학생자치회를 둔다.

1. 회장, 부회장 및 각 학년 자치위원들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2. 학생자치회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전교 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이뤄지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5. 전교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6. 전교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7.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8. 학생자치회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시간을 확보한다.
9. 지도교사는 전교학생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학자치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 7 장 학생생활교육(학생선도)

### 제1절 생활교육(선도)

#### 제 73조 【생활규칙 제정】

1. 본교는 인권 친화적 생활규칙을 제정한다.
2. 교사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규칙을 학생 스스로 제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3.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동체가 공감하고 합의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4. 학생들은 스스로 제정한 생활규칙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며, 교사는 서로 배려하고 평화로운 학급과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 74조 【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복도·계단 및 실내에서는 뛰지 않고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한다.
2.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3.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한다.
5. 물놀이·빙판·화재·교통·자전거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6.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및 학부모 봉사단체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 75조 【진로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 훈련)을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각 학년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 76조 【교외 생활교육】 학부모(단체),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생활교육한다.

###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 77조 【명칭】 이 규정은 '운중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 제 78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79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 80조 【생활교육원칙】 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조사 시에는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

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2.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먼저 고려하여 시행한다.
3.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4.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5. 학생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학생을 생활 교육할 때 절대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7. 생활교육 대상 학생에게 자신의 견해를 말할 기회를 제공한다.
8. 학생생활교육 지도는 교사가 직접 진행하고 학생이 이를 보조하는 행위는 지양하며 학생자치회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제 81조 【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 82조 【기능】**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심의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심의
3.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 83조 【구성 및 직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혹은 담당 교사)으로 한다.
3. 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교육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인사 또는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한다.
5. 위원은 학생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한다.
6. 특정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대책 협의 시 그 학생의 담임교사가 비상상임위원으로 참석한다.

**제 84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85조 【운영】**

1.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4.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은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6.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 86조 【회의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 사안(학습권 침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칙 위반 행동,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 8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절 생활교육처분(선도처분)

**제 88조 【원칙】**

1. 어떤 경우든지 일체의 체벌은 금지한다.
2. 학생생활교육은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에 따라 생활교육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4.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받는다.
5. 학생의 기본생활과 학교폭력 예방,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학생 간의 폭력에 따른 생활교육 조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한다.
6. 긴급사항이나 교권침해 사안에 해당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즉각 회부될 수 있다.

**제 89조 【학생 관련 생활교육】**

1. 학생 생활교육을 통한 학습권 보호 및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움을 즐기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2. 생활인권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
3.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또는 교육활동을 거부하거나 잘 따르지 않는 경우와 같이 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 학습 관련 회복적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4. 수업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행동 (학습권 침해 및 교육 활동 거부 행동 등)을 보이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절차에 준하여 생활교육 및 징계를 결정한다.
5. 학습권 침해 유형 행동으로 수업 중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허락 없이 돌아다니는 행동 등으로 규정한다.

6. 교육 활동을 거부하는 유형 행동으로는 교육 활동 미이행, 소리 지르기, 말장난하기,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규정한다.

### 제 90조 【생활교육의 종류】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 91조 【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3)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2. 사회봉사

-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2)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이 학생의 학생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 3. 특별교육 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 2)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3)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 4. 출석정지

-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제 92조 【생활교육(선도)의 기준】** 학생 생활교육(선도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미인정결석이 (15)일 이상인 학생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참여한 학생		○	○	○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1	징계조치 불이행 및 태도 불성실			○	○
12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3	도박을 한 학생	○	○	○	
14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5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16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
17	교원 외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18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제 93조 【위원회 준비】**

1.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2. 위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1)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 2)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 3)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3.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결정한다.
4.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제 94조 【위원회 개최·진행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가능)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후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 95조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1.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 2)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 3)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 4)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2.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 96조 【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교사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평가에 응할 수 있고, 각종 행사(현장학습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생활교육 조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97조 【학교 단위 불복 절차 : 재심의】**

**1.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 1)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2)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1회 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 3) 학교장은 학생 및 그 학부모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2.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의**

- 1)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한다.
- 2)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가)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4. 학교장 조치**

- 1)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2)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3) 조치 이행

**제 98조【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99조【결과 처리·열람】**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은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학부모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제 8장 학생생활교육(학생선도처분 외 생활지도)

###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00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101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2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03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 제104조【조언】

1. “조언”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05조【상담】

1. “상담”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6조【주의】

1. “주의”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07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08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107조【훈육】

1. “훈육”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 “지시”란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제지”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 등을 학생에게 중지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말에 의한 제지와 물리력을 사용하는 물리적 제지로 구분될 수 있다.
  - 3) “분리”란 학생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적 위치에서 학생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다른 좌석이나 위치, 장소로 이동하여 머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소지 물품 조사”란 학생이 특정 물품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물품 분리보관”이란 학생이 소지한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특정 장소에 일정 시간 내지,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04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06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8. 학교의 장은 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무실을 통해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06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11. 교원은 제7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다른 좌석 포함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수업 시간 내 일부)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 하도록 지시 단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사가 정할 수 있음 -일정 시간 동안 분리 후 복귀	지정된 좌석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른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 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 를 통지함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필요 없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 적 다툼이나 다른 학생 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 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육지원실(기존 2층 교사 회 의실) 등 특정 장소 (문제해결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 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 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 시간에 10분 이상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 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실(기존 2층 교사 회의실) 등 특정 장소 (문제해결 시까지)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각 : 매 교시 수업 시작 시각 이후에 교실에 입실하는 것</li> <li>※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호, 3호-가는 담임교사(또는 도움 요청을 받은 교직원)</li> <li>- 3호-나, 4호는 교직원(전담이나 수업이 없는 교사) 및 관리자</li> </ul> </li> <li>※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li> </ul>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6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휴대전화, 개인정보화기기 등)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육지원실 (기존 2층 교사회의실)	· 분리 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교감은 물품 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 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제108조【훈계】**

1. “훈계”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04조에 따른 조언, 제105조에 따른 상담, 제106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07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09조【보상】**

1. “보상”이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절 기타 사항**

**제1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1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112조【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 9 장 제·개정 방법**

**제 113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호부터 제9호에 따른 학생 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14조 【적용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 11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교육, 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제 116조 【규정개정위원회 운영】**

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교원·보호자·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출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3명으로 하고,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인 3명으로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 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회 대의기구를 대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2명으로 하고 학교장이 위촉 또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전문가는 학생생활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 117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대표 (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 (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 118조 【의견수렴】**

1.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제 119조 【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안 상정, 심의 및 결과에 대한 절차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

**제 120조 【공포 및 공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안내한다.

**제 121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 하고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알린다.

**제 12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혹은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협의로 결정한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